

#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일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글의 제목은 2015년 9월 ‘산업안전보건 혁신의 원칙 및 방향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업안전혁신위원회)에서 나온 것이다. 문장 전체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일은 근로자에게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이고, 기업에게는 경쟁력을 제고하는 최선의 경영전략이며, 국가에게는 명실상부한 선진안전사회를 구현하는 일이다.” 이처럼 근로자에게도 기업에게도 사회 전체에도 안전과 건강이 중요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실제로 2008~2013년의 산재 사망률은 근로자 10만 명당 평균 8명으로 터키(15명)와 멕시코(10명)에 이어 3위에 이를 만큼<sup>1)</sup> ‘산재공화국’의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산재 은폐 문제도 심각하다. ‘산업재해보상 보험제도 개선방안’(국민권익위원회, 2014. 5)이 밝힌 한 가지 실태를 보면, 건강보험으로 대체된 산재가 2013년에 444천 건이었으며, 환수된 금액이 71,300백만 원이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2014)에서 “한국의 산업재해 사고는 OECD 국가들 중 낮은 그룹에 속하지만, 사망률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기이한 산재통계”라 하고 있듯이 산재 은폐가 산업 현장에서 관행이 되어 있을 가능성도 높다. 기업으

1) 세계일보, 2015년 11월 2일자, 「산업현장 안전 강화, 산재공화국 오명 벗어나야」,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11/02/20141102002211.html?OutUrl=naver>

로서는 산재 발생이 보험료 부담 증가, 기업 이미지 손상, 산업안전 특별감독 등의 비용 증가를 우려하기에 산재 보고를 회피하려는 성향을 보이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는 사업주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재해 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에서 명시하고 있다. 참고로 2015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이 발표한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산재 미보고 적발건수는 2013년 192건에서 2014년 726건으로 3.8배 증가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sup>2)</sup>

이번 호 기획특집은 업무와 관련된 질병을 신고하지 않는 사업주를 적발하여 과소신고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유럽 5개국의 노력을 다루고 있다. 특집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첫째, 외국에서도 산재 은폐(과소신고)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집에 소개되지는 않았으나 미국에서도 산재 은폐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는 연구가 있다. Seabury et al.(2014)<sup>3)</sup>은 산재발생건수를 기업의 연령으로 통제하는 회귀분석으로 신생 기업들의 산재 은폐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일부 국가에서 산재 신고의 의무를 의사에게 인센티브와 함께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내에서도 이와 같이 의사나 의료기관에 산재 신고 의무를 부과자는 주장이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셋째로는 과소신고 현황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국가들이 선택한 해결책을 동일한 조건의 다른 국가들이 그대로 모방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기획특집 말미에 서술되어 있듯이, 우리가 서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나

2) 아주경제, 2015년 9월 11일자, 「[2015 국감] 지난해 산재은폐 적발 726건, 전년비 3.8배 ↑」, <http://www.ajunews.com/view/20150911150501132>

3) Seabury et al.(2014), “Is Occupational Injury Risk Higher at New Firms?” *Industrial Relations* 53(1), pp.28-45.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에게 건강보험으로 보상이 된다면, 굳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라는 반론이 주변에서 가끔 들리기도 한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부담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는 차치하더라도 산재 은폐나 과소신고는 산재를 예방하는 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이 때문에 한국이 '산재공화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월계관을 계속 써야 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산재는 피해자에게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기업에게도 동료에게도 그리고 사회 전체에도 미치는 피해이다. 게다가 사망을 비롯한 중대재해가 가져오는 결과는 금액으로 산정되는 이상의 것이다. 이번 호 기획특집이 산재 은폐를 줄이고, 이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밑돌이 되었으면 한다. **KLI**